

2025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단체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2025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단체협약

① 협약의 우선 적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가 맺은 지부협약은 조합과 지부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중앙 사용자 협의회에 가입한 사업장은 본 협약을 당면 적용한다.)

② 사업장 단협 체계정비

① 사업장 단협의 장, 절 체계 정비를 통일한다.

②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맞춘다.

③ 조합 활동 보장

①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각 부서, 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상근 간부(지회 및 분회)들에 대해 유급 시간할애를 보장한다. 단, 전북지부는 소속회사에 3일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 및 지부 임원선거 기간 동안 임원 후보의 유급상근을 보장한다.

③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각 사업장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합원 자녀의 대학입학금(입학 축하금)으로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부에서 합의한 금액을 상회하는 지회 또는 분회는 기존 지원 사항을 유지한다.

④ 자율교섭 보장

전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 방식을 준수한다.

⑤ 직장폐쇄 남용금지

전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⑥ 지부 전임자 처우보장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민주노총 총연맹, 전북본부) 및 금속노조(본조, 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추가 전임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 지회장(분회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 단협이 지부 합의안보다 상회 할 경우 사업장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⑦ 지부 교섭위원 활동보장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연도 노-사 상견례부터 조인식 까지 임시 전임을 보장한다.

⑧ 전북지부 총회시간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북지부 조합원총회를 연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⑨ 안전보호 장구

- 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 ②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 ③ 회사는 충분한 물량의 안전보호 장구를 확보하며 교체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④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지역 및 작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⑩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단, 각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에 연속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1년1회에 한한다. (본 항 중에서 산안법보다 저하된 내용은 산안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조사를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③ 작업환경 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

⑪ 건강진단

- ① 회사는 WHO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전염병 발병시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백신접종을 제공하며, 의료기관의 확진 판정시 공휴일 포함 7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기타 제반 사항은 각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 ③ 회사는 검진 방법, 검진 항목, 검진 시기등 검진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예비조사 및 검진을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④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⑫ 건강권 보호

회사는 조합원의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제출서류 중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⑬ 유해 화학물질 취급

- ①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한글로 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작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취급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북지역 금속산업 사용자는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업체 선정시 지회, 분회와 충분히 협의한다.

⑭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 ① 사망사고(중대재해) 발생시 전북지부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의 해당사업장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 이내 2시간의 안전교육(의무교육시간 외)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법정안전교육시간 중 1년에 2회 4시간 조합주관교육을 사내에서 실시함을 인정한다. (단, 일정 등은 노사협의하며 제반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⑮ 급식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친환경 농, 축, 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⑯ 문화체육행사 지원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1회 전북지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체육 행사에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 3대분의 비용을 지원한다.

⑰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해당지회(분회)와 합의 하여야 한다.

⑱ 유산휴가 및 여성권익보호

① 회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16주 이하 : 의사 소견서에 의해 7일까지 인정
- 16주 이상 :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항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소속 조합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단, 소속 사업장의 단협이 상위할시 해당 사업장 단협에 따른다.

③ 여성의 날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집단교섭에서 논의한다.

⑲ 전북지부 취약계층 제조업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요구

① 전북지부 관계사용자와 전북지부는 전북지역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한다.

② 사회공헌기금은 전북지역 관계사용자가 월 620만원을 출원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의 인원으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측에서 맡는다.

⑳ 제규정 개정

①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취업규칙,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 협약을 준수한다.

②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㉑ 임금체계 개편 임금저하금지

①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

하지 않는다.

㉓ 공민권 행사 보장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수용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적인 업무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②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각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전북이의 지역일 경우 1일을 추가한다.

㉔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㉕ 고용보장

회사(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 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㉖ 위험성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㉗ 전염병 발생시 대책

-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직원 및 출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새롭게 정부가 지정하는 전염병 중 즉각적인 격리와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정부 대응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단, 작업중단은 필수유지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위 질병에 대한 사업장내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동거 중 전염병 확진자 및 확진의심자, 접촉자가 발생할 시 국가가 지정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해당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무급휴가, 연차 강제로 소진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 ③ 2항의 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할 시 기존 노동조건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④ 위 질병으로 인해 원청사를 포함한 거래업체의 물량 부족,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으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해당 조합원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㉗ 산업전환협약

-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② 제 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 ④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㉘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연간24시간)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조합은 2박3일(연간24시간)의 유급교육시간은 자유롭게 연간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시간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㉔ 전북지부 별도 요구안

회사와 노조는 제조업 위기와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지자체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기대응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㉕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㉖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 · 직종 · 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⑤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⑥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 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㉗ 신규채용

-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 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③3 작업중지권 <신설>

- 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조합은 1, 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④ 1, 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 ⑤ 회사는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③4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 ①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조합원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 후 도입한다.
- ② 회사는 작업공정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 활용할 경우 조합에게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2. 2025년 전북지부 임금인상안

2025년 기본급 인상금액은 월 20,000원(정기 호봉 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단, 추가 인상분 및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논의한다.

2025년 12월 16 일

2025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단체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인)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교섭위원 최 응 정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 북 지 부 지 부 장	좌 덕현 (인)	타타대우모빌리티(주)	최 응정 (인)
전 북 지 부 수석부지부장	박금배 (인)	(주)명신	유석원 (인)
전 북 지 부 사 무 국 장	황 의택 (인)	(주)서연인테크	김 의현 (인)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지 회 장	박동훈 (인)	SJG세움(주)	최 정호 (인)
명 신 지 회 지 회 장	최충경 (인)		
서연인테크지회 지 회 장	송현용 (인)		
SJG 세 움 지 회 지 회 장	이상구 (인)		